

인도네시아 아스파라거스 동향 조사

2015.06.01. / 자카르타 aT

□ 아스파라거스 시장규모

○ 인도네시아 통계청 및 농업부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파악이 어려움.

- 아스파라거스 생산 지역은 Bandung, Tawangmangu, Dieng, Baturaden (중부자바), Pegunungan Ijen, Batu, Selecta(동부자바), Puncak, Selabintana, Pangalengan, Lembang(서부자바), Bedegul, Badung(발리), Brastagi(수마트라) 등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재배되는 종은 *Asparagus Officinalis* 임.

○ 수출입 내역을 보면

- 수출은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카타르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14년 수출 총액이 4,313불로 미미한 수준임.
- 수입은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통계 사이트)에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현지 대형 유통매장이나 수입업체 등에 확인해본 결과 소량의 수입산(미국, 페루 등) 아스파라거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 분	2014 년도		비고
	물량(톤)	금액(USD)	
생산량	-	-	* 중부자바, 발리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 불가.
수출량	1.6	4,313	
수입량	0	0	

(출처: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통계청)

□ 시장가격

구분	사진	2015년 5월		원산지
		단위 (kg, g)	금액	
롯데 마트		200g	Rp. 23,000 (약 1,910원)	미 국
그랜드 럭키		200g	Rp. 25,690 (약 2,132원)	페 루
푸드홀		250g	Rp. 33,000~35,000 (약 2,905원)	미 국

100Rp = 8.3원

□ 유통구조

○ 시장 유통단위

- 아스파라거스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고가의 품목이기 때문에 주로 고급 대형유통업체에서 200g~250g 정도의 소포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음

○ 주요용도

- 아스파라거스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생산/수입/유통 업자는 주로 주요 도시 호텔 및 레스토랑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주 고객이 중·상류층인 대형유통매장에서만 일부 판매되고 있음

❑ 취급바이어

- PT. Mulia Raya 는 아스파라거스 수입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입 하던 미국 산 아스파라거스 외에 외국산 아스파라거스 수입 의향이 없음
- PT. Jaya Segar, PT. Salit Rosa 등 야채 전문 수입업체에서도 아스파라 거스는 수요가 적어 수입을 하지 않고 있고 한국 산 아스파라거스 수입 의향이 없음

수입업체	주소정보	업 태	연 락 처
PT. Mulia Raya Agrijaya	Jl.Gedong Panjang 68 A jakarta Utara 14440-indonesia	-야채 수입업체 -미국에서 매주 200kg 수입함. -5kg(Box)=47.5 USD	Ms. Sitie +62-21-669-0704
PT. Jaya Segar Berkat Mandiri	Griya Inti Sentosa, Jl.Griya Inti Sejahtera Blok. O 29 no.101, Sunter Agung,Jakarta Utara 14350	-야채, 과일 수입, 유통 업체	Ms. Ayu Tresna +62-21-6470-3396
PT. Salit Rosa Ausia	/Jl Pasar Glodok Slt 2; JAKARTA; 11120; DKI JAKARTA	-야채, 과일 수입업체	+62-21-628-4770

❑ 아스파라거스 수출입관련 고려 및 참고사항

○ 통관 및 검역 절차

- 신선 과일 및 채소 관련 규정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의 수입조례 관련” 임. 동 규정에 따르면, 원예는 과일, 채소, 채소재료 및 채소, 채소재료 및 화훼류를 총칭하며 진균류, 이끼류 및 수생식물을 포함함.
- 무역부로부터 원예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IP-원예제품) 혹은 원예제 품의 등록 수입자(IT-원예제품)의 면허를 취득한 수입업자만이 원예제 품의 수입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음
- IP-원예제품의 취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무역부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IP/IT - 신청	
서류	IP-원예제품 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발급된 원예제품 원재료의 취급을 허용하는 사업면허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 2. 사업자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 4. 생산자/수입자 등록 번호 (API-P) (사본) 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 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 7. 농림부 장관 혹은 그 위임을 받은 관리로부터의 원예제품 수입 추천서 (RIPH) IT-원예제품 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사업영역이 원예를 포함하고 있는 무역사업면허 (SIUP)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 4. 일반 수입업 등록 번호 (API-U) (사본) 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 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 7. 최소 3개 유통업자와 각기 최소 1년 기간의 원예제품 매매계약 증빙자료 8. 최소 1년 원예제품 유통경험 증빙자료 9. 원예제품이 소비자 혹은 소매상에 직접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공증된 문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2년

- 인도네시아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따라,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 사전통보는 의무사항임. 동 규정의 목적은 신선 과일 및 채소가 병충해로부터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임. 인도네시아에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수입하기 위해 사전 통보 되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원산지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로부터의 식물검역 증명서 (Phytosanitation Certificate)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원산지국가로부터의 무해충 생산지역 확인서
- 농림부 규정 No.42/Perma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을 위한 식물검역 행위 관련”은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다음 4개의 진입항구로만 수입이 될 수가 있음
 - Surabaya, Tanjung Perak 해항
 - Medan, Belawan 해항
 - Jakarta, Soekarno-Hatta 공항
 - Makassar, Soekarno-Hatta 해항

- Jakarta, Tanjung Priok 항구는 WTO CRA(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협정에 합의한 미국, 캐나다, 호주만 원예제품 수입이 가능하며 기타 국가는 불가함. 이로 인해 한국의 경우 Surabaya, Tanjung Perak 항구를 이용해야 함

○ 신선농산물 식품안전 관리 규정

- 신선농산물 수출입 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NOMOR 4/Permentan/PP.340/2/2015 농업부장관령은 ‘15년 2월 17일에 발효되었고’ 16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
-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아야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가능
 - ①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 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 수출국가가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에 대해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았을 경우 (수출업체)는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수출하면 됨
 - ①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신고서만 제출
 - ② 식품안전성 검사실험실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신고서 /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시사점

- 아스파라거스는 건강식품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다수 소비되는 품목으로 소득 수준이 연 3,500불에 불과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음.
 - 실제로 몇몇 채소류 수입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아스파라거스 수요가 많지 않아 수입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함.
- 자체적으로 소량 생산하여 고급 레스토랑 등에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아스파라거스 수출이 어려운 미성숙 시장으로 판단됨.